

영등포구의회
제17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47호로 2012년 8월 3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0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 시 당사자들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절차 이행을 명문화하여 행정규제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화 함
(안 제14조의2제1항)

○ 규제대상 :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나.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행조항 명문화(안 제14조의2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전주시 및 강동구·송파구 등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개정과 처분과 관련하여 대형유통기업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및 절차상 문제점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이 인용되었고

○ 우리구도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2012년 7월 20일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이 제기되어 8월 7일 행정법원이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

○ 따라서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5월 17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 논란 조항과 행정처분의 절차적 문제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 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4조의2제1항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 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일부 강행규정의 형식의 조문을 "구청장은 ~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었고

-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영업시간 제한을 종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로 개정하고

- 의무휴업일을 종전 “매월 2회로 하며, 휴업일은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4조2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명문화하여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함.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고, 대형마트 등의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함에 따라

- 우리구 조례도 위와 같은 부족함을 치유하고 관내의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및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2012년 7월 4일 시달된 서울시 권고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 질서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표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3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①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 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중 행정 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 대한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9.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후 1년이내에 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